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21-23호
입안책임부서	보험급여관리부
제개정 구분	개 정
제정일자	2008. 10. 16.
개정일자	2021. 6. 1.
개정차수	2 차
시행일자	2021. 6. 1.



I 개정 배경

- 직업병에 걸린 사람 중 실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제36조제6항)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이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라 함)

III 평균임금 산정 원칙

- 근로자의 직업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우선 산정한 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1단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 (2단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 → (3단계)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다만, 2000. 7. 1. 이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¹⁾과 직업병 특례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1)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당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률 제6100호(1999. 12. 31. 일부개정)에서 신설됨.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법령 및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산정함.

IV 평균임금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가.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²⁾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가 있으면 그 때 산정한 평균임금을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적용 가능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진단일로 하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제1항 참조)
 - 따라서, 진단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거나, 소속 사업장이 휴·폐업하여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³⁾에서 정한 기간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제외
 - 진단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거나 소속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를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⁴⁾

2) 직업병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말함. 이하 같음.

3)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증감)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를 준용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

나. 임금총액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및 “평균임금 증감”은 “가.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동일

다.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산정 원칙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5)에 따라 적정한 평균임금 산정
 - (① 동종근로자 임금) 제2호·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 및 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통계⁶⁾ 중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감안하여 산정한 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과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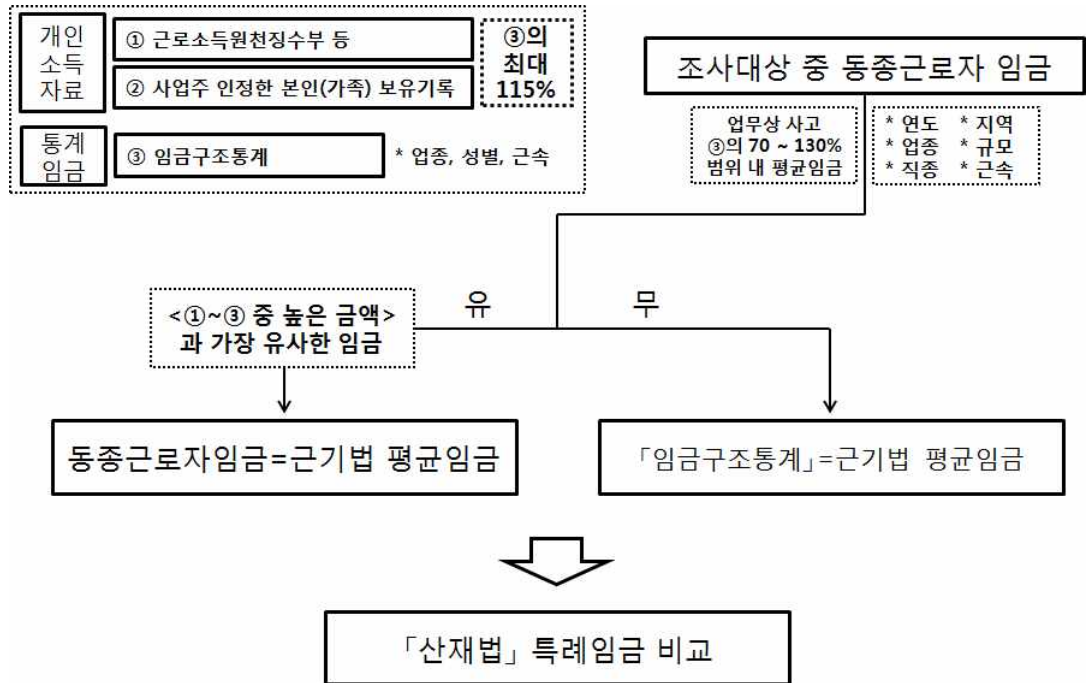
4) 퇴직일·휴업일·폐업일 중 가장 우선하는 날부터 진단일까지를 제외함.

5)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이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6)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 산정에 사용되므로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어 제외함.

- (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임금)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이 없는 경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 구조통계표(구.임금구조통계)를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및 “평균임금 증감”은 “가.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동일

2) 세부 산정 방법

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를 반영한 1일임금액 산정

- (산정 방법) 개인소득자료(※ 개인소득자료에 표기된 기간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에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에서 확인되는 금액의 총액을 해당기간(개인소득자료에 표기된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 산정된 금액이 제5조제5호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통계)에 따른 1일임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임금액으로 함7)

7) 개인소득자료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공로금, 학자금, 장학금 등 임금이 아닌 금액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금액을 임금으로 산정하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최근 30년간(1990년~2019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근로자들 전체 최초평균임금의 평균값을 매년 임금구조통계표의 전산업·전근속에

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1일임금액 산정

-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해당연도의 통계표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⁹⁾를 반영¹⁰⁾하여 월임금총액을 찾은 후 30일로 나누어 1일임금액 산정

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조사

- (조사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된 근로자 중 동종근로자의 최초 평균임금 조사
- (동종근로자 판단기준)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 근속기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
 - (해당사업장이 있는 지역) 공단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기준¹¹⁾
 - (업종)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¹²⁾에서 구분하는 사업종류 대분류
 - (규모) 사업체노동력조사 분류 기준¹³⁾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규모로

해당하는 월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과 비교할 때 최저 73% ~ 최고 115%의 범위에 있어 최고 금액을 115%로 설정함.

8) 매년 6월기준 월급여(정액+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의 1/12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1회 공표함.

9) 소속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년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년수 대신 근속년수를 고려)

10) 해당 근로자의 업종, 성별, 근속년수와 모두 일치하는 월임금총액이 없는 경우 ① 해당 업종과 성별의 전근속 월임금총액, ② 해당 성별의 전산업 전근속 월임금총액의 순서대로 월임금총액을 적용

1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 반영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조사의 지역구분이 광역시·도인 점과, 공단에서 조사할 수 있는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 산재근로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단의 지역본부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함.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를 반영하면서도 비교적 변동성이 낮아 조사의 기준으로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

13) 사업체노동력조사 규모 분류 기준

구분하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¹⁴⁾을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 대상 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규모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소속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지 아니함.

근로자수	30명 미만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규모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 (동일한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기준
- (근속기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5구간(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으로 구분하되, 각 구간에서 동종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근속 구간을 구분하지 아니함.

※ 비교대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사업장의 근속기간 고려

- (제외대상) 조사된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제5조제5호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통계)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1일임금액의 70%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¹⁵⁾

구분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98.12월 이전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99.1월 ~ '07.12월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08.1월 ~ '18.3월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300이상)	
'18.4월 이후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300이상)	

- 14) 제8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②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 ③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수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자수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때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로 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월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12개월(그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15)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의 범위를 제한함. 최근 30년간(1990년~2019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근로자들 전체 최초평균임금의 평균값을 매년 임금구조통계표의 전산업·전근속에 해당하는 월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과 비교할

라) 조사결과 동종근로자가 없는 경우

- 나)번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1일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2.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 산정방법

◇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특례임금 산정

- 다만, 2008. 7. 1. 이후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특례임금을 적용할 수 없음¹⁶⁾

가. 1983. 7. 1. ~ 2000. 6. 30.에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 직업병 진단일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분기당 임금총액¹⁷⁾을 바탕으로 산정

나. 2000. 7. 1. ~ 2010. 11. 20.에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 직업병 진단일 또는 휴폐업일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의한 1년간 임금총액¹⁸⁾을 바탕으로 산정
 - (재직 중 또는 퇴직하였으나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 후 진단받고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다. 2010. 11. 21. 이후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 진폐근로자의 경우 직업병 확인일 기준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적용
- 진폐 이외의 직업병 근로자의 경우, 종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매 최저 73% ~ 최고 115%의 범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범위를 70% ~ 130%로 정함.

16)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7. 1. 지침 제2008-29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휴폐업 이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업무지시(2011. 2. 9. 보상부-1005) 참조

17)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3개월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

18)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

< 산재보험법령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연혁 >

적용시기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점 및 산정방법	통계자료
'83.8.10.~'94.4.30.	-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 분기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하여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95.5.1.~'00.6.30.	-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의 월 급여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00.7.1.~'10.11.20.	-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	매월노동통계 또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10.11.21. 이후	- 진폐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진폐고시임금

< 특례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업종 및 규모 적용 변경연혁 >

적용시기	특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른 업종 및 규모 적용	비 고
'83.8.10.~'94.4.30.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같은 업종, 규모, 성별 및 생산직 근로자의 1분기 임금을 합산하여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 적용	시행규칙
'95.5.1.~'97.12.31.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중분류에 의한 동일한 업종, 동일 규모 적용	규정
'98.1.1.~'98.9.28.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중분류에 의한 동일한 업종 - 그 소속 사업장과 동일 규모 또는 10인 이상 규모, 30인 이상 규모에 의한 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규정
'98.9.29.~'00.6.30.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동일한 업종 (산업중분류 : 10인 이상, 산업대분류 : 30인 이상) - 10인 이상 규모 또는 30인 이상 규모에 의한 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00.7.1. ~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규정

V 행정사항

- (시행일) 이 지침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경우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면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로 본다.